

춘천지방법원 2018. 5. 15 선고 2017가단3010, 2017가단6187(병합) 판결 [구상금 및
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· 배당이의]

전 문

원고강원신용보증재단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3. 27.

판결 선고2018. 5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,948,418원과 그중 20,249,393원에 대하여 2017. 6. 1.부터 2018. 3. 21.까지 연 12%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

종료됨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유재현

별지